

교대제근무자 복무관리 가이드라인

2019.7.

소방재난본부

교대제근무자 복무관리 가이드라인

1. 목적과 적용범위

- 이 가이드라인은 서울특별시 교대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 등 복무에 관련된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서 일선 소방관서에서 교대제근무자에 대한 복무관리 및 지도에 참고 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함.
- 이 가이드라인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산하 모든 기관의 교대제근무자에게 적용하며, 별도의 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함.
- 이 가이드라인은 교대제근무자 복무 적용의 일반적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사례별로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함.

2. 용어의 정의

- 외근근무 : 화재, 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하는 소방공무원의 교대제 근무형태의 근무

* 일상적으로 24시간 계속하여 대응·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

- 교대제근무자 : 직무의 성격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교대 근무명령에 따라 2개 이상의 조로 나누어 근무하는 공무원
- 당번 : 교대제 근무자가 일정한 계획에 따라 근무하는 날 또는 일정한 시간을 말하며, 주간, 야간, 전일근무로 구분한다.
- 비번 : 교대제 근무자가 일정한 계획에 따라 다음 근무시작 전까지 자유롭게 쉬는(휴무) 것

- 휴무 : 근무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피로회복 등 건강유지를 위하여 별도로 지정한 일정시간 동안 근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쉬는 것
- 초과근무 : 정해진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명령을 받고 근무하는 것
- 대체근무 : 출동 소방력 확보를 위해 근무조를 변경하여 근무하는 것
- 출근 : 정해진 근무시작 시간까지 근무 장소(사무실 또는 현장 등)에 도착하는 것
- 출장 :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
- 휴가 :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 (지각, 외출, 조퇴 포함)
- 교육 : 교육과전(지방공무원임용령)과 교육출장(지방공무원복무규정)으로 구분

3. 교대근무자 근무시간

- 근무시간 : 외근근무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당번근무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함.
 - 2교대제 근무시간은 09:00~익일 09:00까지 24시간(전일)으로 함.
 - 3교대(3조2교대)제 주간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로, 야간 근무시간은 18:00~익일 09:00까지로 함.
 - 4교대(4조2교대)제 주간 근무시간은 09:00~21:00까지로, 야간 근무시간은 21:00~익일 09:00까지로 함.
- ※ 4조2교대 근무시간은 관련 규정의 개정 시행 전까지는 별도 방침에 따름
- 휴무시간 : 1당번 근무시 평균 24시간 이상의 휴무시간 부여
- 휴게시간 : 근무시간 도중 매 8시간마다 각각 40분 이상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기관 근무일과 운영에 따라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주간 : 12:00~14:00 (시간 중 1시간)
 - 야간 : 23:00~07:00 (시간 중 2시간)
- ☞ 출동대비근무 및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은 근무일지에 기재
- 공동근무시간 : 주·야간 교대점검시 20분 (2018.8.1.부터)

4. 근무변경

- 출동소방력 기준*에 따라 필요한 소방력 확보를 위해 정해진 근무를 변경할 수 있음. (주간 또는 야간을 전일로 변경 등)

* 출동소방력 기준은 각 기관의 특성과 일상적 사고자(휴가, 교육 등) 비율을 고려하여 책정

* 1근무조의 일상적 사고자는 일정 비율(30~40%)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부서장(센터장)은 1근무조 출동소방력 기준에 필요한 최소 인원에 대해 대체근무자로 지정함.
- 휴가실시에 따른 근무조 변경은 휴가신청자의 담당업무, 보충근무 여부, 소방력 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휴가 허가권자가 결정함.
- 근무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결재를 받아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근무시작 후 2시간 이내 결재를 득해야 함.

◆ 출동소방력 기준 이외 대체근무자 지정 요건

- 출동소방력 운용 기준을 벗어나 부득이하게 사고자가 발생한 경우
예) 정해진 사고자가 있는 근무조에서 특별휴가(경조사휴가) 등 신청자가 발생한 경우
- 교육 등 장기사고자가 있어 해당 근무조에서 휴가 실시가 곤란한 경우

- 근무변경은 필요한 최소한의 소방력 확보를 목적으로 근무자를 지정 하고, 부득이한 경우(경조사 특별휴가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한 정하여 추가로 대체근무자를 지정하여 근무명령함.

- 부서장(센터장)은 특정 인원에게 대체근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

- 근무변경에 따른 근무시간은 기존 근무를 포함하여 2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명령을 할 수 없음.

예외) 비상근무, 시·구 단위 훈련(행사) 동원 등 근무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근무 특성상 교대근무 시간이 별도 지정된 경우

- 전일근무로 변경하는 경우 근무 다음날은 24시간의 휴무를 주어야 함.

- 2일 이상의 행정업무 지원(출장)근무를 명령 할 경우 해당 기간의 근무형태를 일근근무자와 동일하게 지정하여야 함.

- 주간(월~일) 평균 1당번 후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간은 일근근무자로 근무형태를 지정하여야 함.
- 2일 이상의 지원(출장)근무 이후 복귀일 야간근무는 근무여건을 고려해서 휴무로 근무변경을 할 수 있음.

5. 초과근무

- 기관장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를 명할 수 있음.
- 초과근무는 근무명령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하며, 초과근무수당이란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말함
- 초과근무시간 산정방법

◆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 근무시간(월간) +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시간(월간) + 식사시간(월간) + 수면시간(월간) + 휴식시간(월간) }

- ※ **실제 총 근무시간**은 각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1개월간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총 시간을 의미함
- ※ **공무원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산정하되,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 따른 휴가기간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기간을 제외함
-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 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월간으로 계산하되, 분단위 이하는 제외한다. 다만, 각 기관이 운영하는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의 범위에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한다. (단서 2012. 9. 28. 개정)

◆ 공제하지 않는 휴게시간의 적용조건 (인사과-5897호, 2013.3.5.)

- ① 부서장의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서 휴게(식사)시간을 운용
- ② 휴게(식사)시간에 부서장의 지휘·통제 범위를 벗어난 경우 복무위반으로 처리

- 산식에 따라 월간 시간외근무시간이 마이너스로 계산된 경우 '0'으로 처리

◆ 질의답변 사례 ※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 민원답변 참고

질문1 현업근무자 마이너스 초과근무 질의 (2019.2.17.)

답변1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이 마이너스 (-)로 계산되는 경우 0시간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초과근무 명령 및 확인 절차



- 비번자 동원 계획은 기관장 결재, 일자별 명령 및 확인은 부서장(센터장) 결재
※ 휴가(지참, 조퇴 등) 실시에 따른 근무조 변경 및 비번자 초과근무명령은 부서장(센터장) 전결
- 초과근무 명령은 기관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초과근무 확인은 출퇴근 서명부(감독자 확인 必), 시스템 출입 기록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여야 함.
- 출동 귀소 지연으로 인한 초과근무는 수당 반영을 위해 내역서만 결재 (초과근무 사후명령 및 초과근무 확인 서명부 등 불필요)

○ 초과근무 확인 방법

- 근무지(관할지역)내 : 지문인증 또는 서명부 (기관 사정에 따라 선택)
- 근무지(관할지역)외 : 출·퇴근 서명부 (운영부서 감독자 확인 必)

예) 비번자를 훈련에 동원한 경우 훈련 참석자는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훈련 주관부서 책임자는 참여자 근무시간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서명함.

- 초과근무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지정 근무시간(결과보고서 제출)
 - ☞ 소방관서 외부에서 근무함으로써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근무 명령에 따라 지정된 근무시간 동안 근무한 것으로 봄. ⇒ 초과근무 내역 보고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첨부
- 초과근무 제한 (과도한 초과근무 발생 방지)
 - 초과근무 명령권자(기관장)는 과도한 초과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외근근무와 관련이 없는 업무에 초과근무를 명령 할 수 없음.
 - 출동대기, 법정 의무 사항 이외의 비번일 초과근무 명령은 일일 4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일부 직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의 월간 초과근무 내역 확인

◆ 현업공무원 '시간외근무시간 인정 여부' 인사혁신처 협의 결과 (소방정책과-10758호, 2015. 11. 18)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와 관련된 직장훈련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긴급구조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동원된 비번 및 휴무자에 대하여 추가 근무명령에 따라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됨

6. 출장

- 출장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공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 출장 처리를 해서는 안됨.

◆ 사례별 출장조치 가능여부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주최 체육행사에 교원이 선수로 참여하는 경우, 체육행사의 주체가 행정기관이 아닌 교원의 이익단체이고 또한 교원 본연의 직무수행과 무관한 활동이므로 출장조치 불가
-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2인 이내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조치가 가능함. 이 경우 경조사가 있는 직원과 출장명령을 받는 공무원은 동일한 단위 기관에 근무하고 있어야 함.
- 기관장이 취임식 또는 정년퇴임식에 참석하는 경우, 행사 주관기관에서 참석대상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참석을 요청한 경우 해당 참석자에 대하여는 출장조치가 가능하나, 그 외에 친분관계 등을 이유로 하는 개인적인 참석에 대하여는 출장조치 불가

- 재해·재난 발생지역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출장조치 불가. 다만, 재해·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음
- 기관차원의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등은 출장조치 가능
-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이 기관장과의 정기적인 협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출장조치가 가능하나,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개최하는 운영회의 참석은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 제한’ 규정에 따라 출장조치 불가
-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기관 주최 행사에 초청되어 참석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소속기관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출장조치 가능
- 타기관 소관 위원회 위원 또는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임원으로 위원회 등 회의 참석시 본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소속기관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출장 조치 가능

○ 출장과 공가·연가의 구분

- 공가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못하거나 외출이 필요한 사유 중에서 담당 직무와 직접 관계가 없어 출장으로 처리할 수 없고, 그렇다고 순수한 私務가 아닌 경우로서 연가로 처리하기도 부적절한 **중간적인 성격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휴가의 일종임.**
- 연가는 공무원이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취하여 근무능률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사생활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임**

※ 출장·공가·연가의 구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 구 분 | 사 유(예시) |
|-----|---|
| 출 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취임식에 공무원대표로 선발되어 참석 • 월드컵 주관 공무원이 업무 수행 차 경기장 방문 • 행정안전부 주관 전 부처 동호인대회 참가자 인솔 |
| 공 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취임식에 일반시민 자격으로 초청되어 참석 • 월드컵 시민서포터즈의 일원으로 참여 • 행정안전부 주관 전 부처 동호인대회에 선수로 참가 |
| 연 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취임식 구경, 월드컵 단체관람, 부처별 동호회 행사에 참가 • 도민체전이나 자치단체 주관의 체육행사에 선수로 참여 ※ 자치단체의 경우 복무조례에 정한 경우 공가 가능 • 다른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신체검사에 필요한 건강검진 |

○ 출장과 초과근무

- 출장기간 중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출장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이동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고려하여 출장기간을 부여하여야 함
- 국내출장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시간외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중 또는 출장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가능

◆ 참고사례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 교육과전 중인 경우의 초과근무 : 과전기관의 장에게 복무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교육과전 기간 중에는 소속 부서장이 초과근무명령을 할 수 없음. 다만, 교육 종료일의 종료시간 이후에는 가능
- 휴일의 교육참가, 행사동원 시의 초과근무 : 초과근무는 본연의 업무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연의 업무가 아닌 교육 참가나 시험감독 등 행사에 동원된 경우에는 초과근무명령이 불가능
- 휴가 중의 초과근무 : 휴가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휴가 기간 중은 물론 휴가 마지막날의 근무종료시간 이후에도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음(휴가는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

○ 출장 중 시간외근무 병급 처리 기준

- 관내출장 : 외근 근무시간 중 본연의 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 시간
- 관외출장 : 출장 기간 중 본연의 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 시간(1일 8시간)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20조~제40조의 현장상황근무, 일반적근무 및 특수한 근무
- 관외출장 또는 비번일 출장 근무가 외근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시간외근무 시간으로 산정할 수 없음.(실비 보상의 출장비 지급은 가능)
 - 조문 대표, 단순 행사(회의) 참석, 체육행사(대회) 참가, 체험연수, 문화탐방, 단체 워크숍 또는 박람회 참관 등 외근근무와 관련 없는 경우 실제 근무시간에서 제외
 - 교육여행 동행 등 별도의 방침을 받은 업무 또는 행정 지원근무는 해당 출장시간 초과근무명령 가능
- 관외출장 또는 비번일 출장 중 시간외근무 인정 처리 시에는 실제 근무시간(근무시작~근무종료)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함.

◆ 질의답변 사례

질문2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의 동시지급 가능여부 (2018.5.24.)

답변2 출장기간 중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장시에는 일반적으로 근무상황에 대한 직근 상급자의 감독이 불가능하여 시간외 근무여부 및 근무시간(근무시작시간-근무종료시간)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고 관외출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루 단위로 발령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고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자로서, 일반적으로 시간외근무 인정 절차를 거치고, ‘출장간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내 출장이나 휴일 출장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현업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질문3 현업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인정과 출장비의 성격 (2013.6.6.)

답변3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은 1일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 ‘실제 총 근무시간 에서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월간으로 계산하며, 분 단위 이하는 제외합니다. 현업대상 공무원이 비번일에 본연의 업무로 인한 상사의 명을 받고 출장하는 경우 해당 출장시간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의 월간 실제 총 근무시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본연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직장교육, 행사참석 등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출장이라 함은 상사의 명을 받고서 정규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여비는 상사의 명을 받고서 정규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에 대한 실비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여비조례에 의거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4 교대근무자의 비번일 기관주관 행사참여시 시간외 인정여부 (2016.3.16.)

답변4 현업부서 마다 근무시간 및 휴가관련 규정은 각각의 현업기관의 특성에 따라 당해 현업기관의 장이 종합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개별적인 시행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초과근무는 본연의 업무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연의 업무가 아닌 교육참가(워크숍, 세미나 등)나 시험감독 등 행사에 동원된 경우에는 초과근무명령이 불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질문5 현업공무원 비번일 관외출장시 초과근무 인정여부 (2015.5.5.)

답변5 국내출장시에는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 사전 신청, 명령 등 일반적인 시간외근무 인정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하나 시간외근무수당은 본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출장간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본연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로 근무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시간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례는 우선 해당 출장간 수행한 업무를 본연의 업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하고,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하여 본연의 업무에 종사한 실적시간이 있는 경우 현업대상자의 시간외근무 계산식의 총 근무시간에 해당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6 현업근무자 시간외 수당 관련 (2017.9.19.)

답변6 비번일 출장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당해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로 인한 출장인 경우 '실제 총 근무시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본연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행사참석 등의 경우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사료됩니다.

7. 교육

- 교육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파견(입교)과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에 의한 교육훈련 출장으로 구분함.
 - 교육입교는 1일 단위로 근무명령하고, 교육출장은 시간 단위로 근무명령
 - ※ 교육입교시 '공가'로 결재를 받으나 휴가가 아님에 유의 ⇒ 교육으로 복무처리
- 교육시간과 초과근무
 - 월 초과근무시간 산정시 교육입교 기간은 실제 총 근무시간과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에서 모두 공제함.(교육기간 중 공휴일, 토·일요일은 제외)

- 비번일에 실시하는 교육 중 법정 의무교육은 해당 교육시간에 대해 초과 근무 인정 처리 가능하나 기타 일상교육*은 출장 처리
 - * 기타 교육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종료 (일상적 전달교육은 소집 지양)
- 교육 입교 전일이 당번(전일 또는 야간) 근무일 때 근무인원 조정이 가능할 경우는 근무변경(전일→주, 야→비) 조치하고, 근무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입교 당일 7시 이후 교육출장 처리 ☞ 입교일 교육출장은 근무일지만 기재
- 교육 수료일 다음 날부터 외근근무에 임함. 단, 1일 집합교육은 교육 수료 후 소속 기관의 소방력 여건에 따라 야간근무를 명할 수 있음.
- 교육과 근무시간을 합하여 24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질의답변 사례

질문7 현업공무원의 교육참석을 위한 공가 사용 (2017.10.16.)

답변7 교육참석의 경우 전보발령에 해당하지 않아 공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당해 교육훈련과정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이동 등의 부득이한 경우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득이한 경우 교육훈련을 수행하기 위해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 또한 교육훈련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자격증 보수교육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유지를 위한 개별법령에 따른 보수교육은 ‘공가’ 처리가 가능함.
 - 소방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방관련 보수교육은 4시간 ‘교육’ 처리.
 - ⇒ 근무자는 교육출장, 비번자는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에서 4시간 공제

◆ 질의답변 사례

질문8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출장 가능 여부 (2017.6.13.)

답변8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의 유지를 위한 개별법령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하여는 ‘공가’처리가 가능하며, 공무원 임용시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개별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이 공무원 임용요건으로 의무화 된 경우에는 ‘교육파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소방직무 관련 자격·인증 시험 응시는 '출장' 처리 가능, 기타 국가기술자격 취득 등의 시험 응시는 개인 '연가'를 활용하여야 함.

◆ 자격 시험응시 '출장' 처리 요건 (소방정책과-2237호(2019.4.4.))

- ① 소방청에서 정책적으로 자격·인증 취득을 추진하는 시험
- ② 소방학교에서 시험을 주관·실시하거나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시험
- ③ 현장 소방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인증 시험
- ※ 출장 대상 자격·인증시험 : 인명구조사, 화재대응능력, 화재조사관, 응급구조사

8. 공무국외여행

- 공무국외여행 명령*을 받은 교대근무자는 해당 기간 동안 일근근무자와 동일하게 복무 처리하며, 해당 기간은 실제 총 근무시간과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에서 모두 공제함. ⇒ 해당 기간은 일근근무 기간으로 처리
- 공무국외여행, 국외훈련(기획연수, 글로벌정책체험 등) 등
- 복귀일에 근무(주,야,전일)가 포함된 경우는 휴무토록 근무조정 가능
 - *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및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경우에 한함
- 국외 현장 지원업무 출장근무 명령을 받은 교대근무자는 명령일부터 복귀일까지 파견 기관의 복무 규정에 따르며, 귀국 후에는 복무 관련 자료를 받아 출장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질의답변 사례

질문9 휴일 국외출장시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 여부 (2015.6.11.)

답변9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국외출장자의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현업대상자와 일반대상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질문10 현업근무자 국외출장시 초과근무 질의 (2018.12.01..)

답변10 국외출장의 경우 해당시간은 현업대상의 실제 총 근무시간 및 복무규정상 근무시간 양쪽에서 모두 공제되어야 합니다.

9. 행정사항

- 「교대제근무자 소방활동 지침」(2017.6.29.) 및 「희망근무제 운영 개선 방안」(2016.12.27.)은 폐지하고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대체함.
- 교대제근무자 휴가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에 따르며, 교대제근무자 복무와 관련된 규정이 개정 시행됨으로써 가이드라인과 상이한 경우 개정된 복무 관련 규정에 따름.
- 이 가이드라인을 수정 또는 변경할 경우는 별도로 문서로 안내하며,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 처리된 사항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 관련규정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소방청 훈령)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소방청 예규)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서울특별시 조례)
-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서울특별시장 방침)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소방재난본부장 방침)